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효력발생일** : 2015. 2. 23.

□ **정정 사유**

- (1)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 (2)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10. <u>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2014.07.20. :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 2014.07.25. : 투자신탁 최초 설정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4.8.31	<u>2015.1.31</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u>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u> <u>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금 펀드</u> <u>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펀드</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u>환매조건부 매수</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u>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u> <u>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u>

<p>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금 펀드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펀드</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p>	<p>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p>

	<p>분리과세한도 :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p> <p><u>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u>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p><u>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u></p> <p>분리과세한도 :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p> <p><u>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u></p> <p><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u>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u>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p>	<p>법 개정사항 반영</p>	<p><u>(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p>	<p>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p>	<p><u>(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회계감사 관련 내용 기재</p>	<p><u>③회계감사</u>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p>

		<p>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